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64호

「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16호, 2013.7.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6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

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가 규칙 제19조”를 “이 법 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규칙 제18조”를 “「궤도운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